

2004년 3월 26일 (조간)부터 사용해 주십시오



- ▶ 2004. 3. 25 배포
- ▶ 총 쪽

보 도 자 료

- ▶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사무관
T E L : 2110-7080
E-MAIL : epd01@chol.com
F A X : 502-6855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최신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「'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」 확정·발표

- ☑ 고용허가제 송출국가로 필리핀, 태국 등 8개국 지정
 - 필리핀, 태국, 몽골 등은 우선 MOU 체결
 - 나머지 5개국은 현지조사시 발견된 미비점 보완 후 MOU체결키로
- ☑ 제조업 등 5개 업종에 79천명의 외국인력 신규 도입
 - 고용허가제 25천명, 취업관리제 16천명, 산업연수제 38천명
- ☑ 신규외국인력 도입이 확정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불법고용에 대한 강력한 사업주 단속·처벌키로

- 정부는 3.25(목) “제1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(위원장: 국무조정실장)”를 개최하여 외국인력 송출국가, 도입규모·업종 등의 내용을 포함한 「'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」을 확정하였다.

□ '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의 주요내용은

<송출국가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>

- 송출국가는 그간 산업연수생의 운영경험, 효율적인 외국
인력 도입·관리 및 송출과정에서의 비리근절 등을 위해
통제·관리가 가능한 숫자로 제한키로 하였다.(산업연수생
송출국가는 17개국)
- ※ 송출국가 선정기준 : 사업주 선호도, 사업장 이탈률, 송출과정의
투명성, 외국인 근로자 만기 출국 가능성, 외교적·경제적 영향 등
- 관계부처 회의 및 선정기준별 국가평가를 통해 인도네시아,
태국 등 8개국을 송출후보국가로 내정하고 현지조사를
실시(3.8~3.13)하였으며
 -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송출국가와 양해각서(MOU)를
체결할 예정이다.
- 다만, 각 국의 인력송출 관련 기본인프라 구축 정도가
다름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하였다.
 - ▲ 1단계(MOU 즉시 체결 가능국) : 인력송출이 준비된 필리핀,
태국, 몽골
 - ▲ 2단계(미비점 보완후 MOU 체결국) : 공공송출기관 부재 등
미비점이 발견된 중국, 카자흐스탄, 스리랑카, 베트남,
인도네시아 등 5개국은 4월말까지 보완대책 수립 시 양해
각서 체결
- 특히, 정부에서 누차 천명한대로 2월말 限 자진출국한
불법체류자 중 송출국가의 자진출국자에 대해서는 고용허가제
구직자 Pool에 포함되도록 송출국가에 요구키로 하였다.

<외국인력 도입업종>

- 외국인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력 허용업종도 기존 외국인력 제도(취업관리제, 산업연수생)의 5개 허용업종으로 제한하였다.
 - ※ 현 외국인력허용업종 : 제조업, 건설업, 농축산업, 연근해어업, 서비스업 6개 업종(음식점업, 사업지원서비스업, 사회복지사업, 청소 관련서비스업, 간병서비스업, 가사서비스업)
- 추가적인 허용업종의 결정은 인력부족률, 내국인 대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입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되
 - 숙박업종, 양식어업 등의 추가 허용요구에 대해서는 내국인 대체가능성, 노조 및 관련 부처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하반기에 검토기로 하였다.

<외국인력 도입 규모>

- 산업별 인력수급 현황, 내국인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적정 규모를 산정하였으며,
 - 고용허가제 시행 첫해인 금년에는 약 79천명의 외국인력을 신규 도입기로 하였다.
- 다만,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실시, 고용허가제 시행시기가 하반기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고용허가제 25천명, 취업관리제 16천명, 산업연수제 38천명으로 제도별 도입 규모 배분을 확정하였다.
 - ※ 허용 업종별 규모 : 제조업40천명(고용허가제17, 산업연수제23), 건설업26천명(고용허가제6, 취업관리제 12, 산업연수 8), 서비스업 4천명(취업관리제), 농축산업4천명(고용허가제2, 산업연수제2), 연근해어업5천명(산업연수제)

- '05년부터는 사업장 이탈률, 불법체류자 비율, 사업주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양 제도간 신규도입규모를 매년 합리적으로 조정기로 하였다.

○ 송출국가별 도입규모는 각 송출국가별로 동일한 규모의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·유지토록 하고

- 사업주가 외국인 구직자 Pool내에서 희망하는 국가의 외국인근로자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수요가 반영되도록 하는 도입규모 방식을 채택하였다

<불법체류자 고용 근절 추진>

○ 정부는 이번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발표로 인해 불법 체류자 단속에 대한 명분을 얻은 만큼

- 관련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고 철저한 단속(사업주 위주)도 동시에 추진기로 하였다.

□ 노동부는 「'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」이 확정됨에 따라

○ 4월중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, 7월까지 외국인고용 관리전산망 등 고용허가제 기본인프라 구축을 통해

- 금년 하반기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도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.

※ 붙임 : 「'04년 외국인력 수급계획」 주요내용

【참고】

'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 주요내용

< 배 경 >

- ◆ 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」 제4조에 의해 국내
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한 적정 외국인력 도입업종·규모의
결정, 송출국가 선정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력
수급계획을 매년 마련·시행
 - 외국인력정책(고용)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노동부
장관이 이를 공표
- ◆ 금년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시행의 첫해로서
 - i)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요 충족 ii) 송출비리, 불법체류자
문제의 해결 iii)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
고려하는 외국인력 수급계획의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
- ◆ 외국인력 도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관리의 효율성을
도모할 수 있는 「외국인력 수급계획('04년)」을 수립하고
체계적으로 추진

I. 추진경과 및 기본방향

1. 추진경과

- 지난 10여년간 외국인력 운영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의 급증, 송출비리, 인권침해 등의 문제 발생
- 「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」이 제정·공포('03.8.16)됨에 따라 '04년 8월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제 본격 시행 예정
 - 동 법 부칙에 의거 산업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법 체류자 합법화조치('03.9월~11월)를 기 실시하여 184천명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(최장 2년간 취업활동 허용)
 - 「산업연수생제도」와 병행 실시하되 「외국국적동포 취업관리제」는 고용허가제에 흡수·운영
- 그간 외국인력 수급계획 마련을 위해 도입업종·규모 및 송출국가 선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 및 설문조사 실시
 - ▲ 송출예상국가의 직업안정기관 및 인력송출 현황 파악 ('03.10)
 - ▲ 적정외국인력 도입규모 및 도입국가선정에 관한 연구(노동연구원,'03.11)
 - ▲ 송출국가 선정에 관한 설문조사(노동연구원,'03.10), 송출국가 선정 관련 사이버 설문조사(노동부 홈페이지, '03.10)
- 2차례의 관계부처 실무회의를 거쳐 「'04년 외국인력 수급 계획(안)」 마련
 - 송출후보국가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조사 실시 ('04.3.8~ 3.13)

2. 기본방향

□ 내국인 고용기회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력 활용

- 외국인력은 내국인으로 충원할 수 없는 부분(3D 업종 등)에 한하여 보완적으로 활용(내국인 우선고용의 원칙)
 - 내국인의 고용기회 잠식과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해를 방지

□ 산업구조조정을 저해하지 않는 도입업종·규모 결정

- 저임금 단순기능 외국인력에 안주할 경우 산업 구조조정 및 산업경쟁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외국인력 도입 업종·규모 결정

□ 송출비리 방지를 위해 외국인력 선정·도입절차를 투명화 하고, 인권침해 등을 최소화

- 정부간 양해각서(MOU)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 선정·도입 담당(민간 송출회사의 개입 및 부조리 소지 제거)
-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보호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방지 하고 반한 감정 등의 갈등 최소화

□ 불법체류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

- 대체외국인력의 공급과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길을 넓혀줌으로써 불법고용·취업유인을 최소화
 - 효율적인 외국인 고용관리 체계를 구축(전국 155개 고용 안정센터 활용)하고 불법체류자 규모와 연계된 송출국가 선정(penalty 부여), 도입업종·규모 결정

※ 대만의 경우 고용허가제 도입이전('92년) 15만 여명에 육박했던 불법체류자수가 2만 여명('03년)으로 감소

II. 송출국가 선정 및 양해각서 체결

- ☐ 효율적인 외국인력 도입·관리라는 고용허가제의 도입 목적과 다수의 송출국가로 인해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연수생제도의 운영경험을 감안
 - 송출국가와의 협력 비용, 입국한 근로자에의 편의(언어 등) 제공 비용, 인력관리비용 등을 고려하여 최초 송출국가는 통제·관리 가능한 숫자만큼 선정
- ☐ 중소기업 사업주와 전문가,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
 - 사업주 선호도, 사업장 이탈률, 송출과정의 투명성, 외국인 근로자 귀국담보 가능성, 외교적·경제적 영향력 등을 선정기준으로 결정
- ☐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력의 90%가 現 연수생 송출국가 출신인 점을 감안하여 연수생 송출국가(17개국) 대상으로 평가 실시
- ☐ 선정기준별 국가평가를 종합한 결과 인도네시아, 태국, 베트남, 필리핀, 중국, 스리랑카, 카자흐스탄, 몽골 등이 송출후보국가로 선정
- ☐ 송출후보국가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후 송출국가를 최종 결정
 - ▲ 조사기간 : '04.3.8(월)~3.13(토)
 - ▲ 4개팀(노동부, 외교통상부, 법무부, 국무조정실 합동)이 2개국씩 조사
- ☐ 최종 결정된 송출국가와 양해각서 체결 예정(4월중)

□ 현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송출국가와의 양해각서 체결은 2단계로 추진

○ 1단계(MOU 즉시 체결 가능 국가) : 몽골, 필리핀, 태국

○ 2단계(미비점 보완 후 MOU 체결 가능 국가) : 중국, 카자흐스탄, 스리랑카, 베트남, 인도네시아

- 4월말까지 보완대책 수립시 MOU 체결

Ⅲ. 도입 규모

1. 신규 도입규모

□ '04년 총 신규도입규모 약 79천명

: 제조업 40천명, 건설업 26천명, 서비스업 4천명, 농축산업 4천명, 연근해어업 5천명

< 제도별 도입규모 · 시기 >

(단위 : 천명)

업 종	신규도입규모	제도별 도입규모 · 시기		
		제 도	도입규모	도입시기
제 조 업	40	산업연수제	23	상반기
		고용허가제	17	하반기
건 설 업	26	산업연수제	8	상반기
		취업관리제	12	
		고용허가제	6	하반기
서비스업	4	취업관리제	4	상/하반기
농축산업	4	산업연수제	2	상반기
		고용허가제	2	하반기
연근해어업	5	산업연수제	5	상반기
계	79	산업연수제	38	상반기
		취업관리제	16	상/하반기
		고용허가제	25	하반기

2.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배정

- 사업주의 선호도가 높은 송출국가의 우수 인력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국가별 도입규모 배분
- 각 송출국가별 외국인구직자 명부는 동일한 규모로 작성하고
 - 작성된 외국인 구직자 Pool내에서 사업주 선택에 따른 취업알선 및 적격자 추천
 - 노동시장의 수요에 따른 송출국가별 도입규모 배분 (신규 도입규모의 범위 내)

IV. 불법체류자 고용근절 추진

- 향후, 합법적인 외국인력 공급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 수가 감소하지 않을 경우
 - 외국인근로자 과포화로 인한 심각한 내국인 고용기회 침해 및 체류·고용관리에 상당한 어려움
- 신규 외국인력 도입규모 발표로 불법체류자 대체인력이 충분히 공급됨으로써 불법체류자 고용사업주에 대한 철저한 단속 추진
 - 관련 부처 및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체류자 고용 근절에 대한 캠페인 등을 시행 예정
 - ▲ 방송매체 등을 적극 활용한 캠페인 추진
 - ▲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하면서 일제 단속을 주기적으로 실시
 - ▲ 연수추천단체·사업주단체·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불법 고용근절 운동 전개

V. 향후 추진일정

☐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(3.25)

- 송출국가, 도입규모·업종 등 '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 확정

☐ '04년 외국인력수급계획 공표 (3.30 잠정)

☐ 송출국가와 협정(양해각서)체결 (4월 중순)

☐ 외국인고용관리전산망 개발 등 고용허가제 인프라 구축 (2월~8월)

※ 전산프로그램 사업자 선정 (2월) 후 프로그램 개발 진행 중

-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각종 지침 작성 (4월~6월)

- 실무담당자 교육 및 홍보실시 (5월~7월)

☐ 외국인근로자 본격 도입 (8월)

외국인력 현황

('04.2.29현재)

(단위 : 명, %)

전 체	합 법 체 류 자						불 법 체 류 자
	소 계	취업사증 소지 근로자			산 업 연수생	해 외 투 자 기 업 연수생	
		전 문 기 술 인 력	연 수 취 업 자	비 전 문 취 업 자			
406,271 (100.0)	266,764 (65.7)	19,894 (4.9)	28,119 (6.9)	176,049 (43.4)	31,009 (7.6)	11,693 (2.9)	139,507 (34.3)

외국인력 변동 추이

